

2019년 4/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

「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 제3조(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) 제3항에 따라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 드림

□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: 1건 140,000천원

○ 세부내역

(단위: 천원)

구 분	정책사업	단위사업	세부사업	통계목	예비비 지출금액	지출일
한강사업본부	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	한강공원시설 관리 및 개선	녹지시설 유지관리	공공운영비 (201-02)	140,000	'19.12.16.

○ 예비비 지출사유 : 손해배상소송 공탁금 지급

□ 소송개요

○ 사 건 명: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0000000 손해배상(산)

- 원 고: 전00(1900. 0. 0./남) (소송대리인: 신현호 변호사)

- 피 고: 서울특별시 (소송대리인: 이명섭 변호사)

○ 사고경위

- 2012. 8. 28. 15:50경 한강공원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던 전00(원고)는 마포대교 검문소 옆 계단에서 태풍(볼라벤, 태풍강도 7.3~7.4㎜, 작업이 가능한 정도 위력)으로 쓰러진 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나무에 깔려 엉덩이 관절 및 넓적다리 부위 신경 손상

○ 소송경위

- 한강사업본부(피고)의 무리한 작업지시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및 일실수익손해금 등을 사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('16. 10. 10.)

작성 자

공원부장 : 김인숙 ☎ 3780-0627 녹지관리과장 : 광영만 ☎0860 담당 : 윤정환 ☎0833

○ **소송결과 및 진행사항**

- '12. 8. 28.: 사고발생
- '16. 10. 10.: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기(금346,604,023원 청구)
- '16. 11. 22.: 피고(서울시) 답변서 제출(총 5회)
- '19. 5. 10.: 1차 법원 화해권고 결정(2억5,500만원 지급 취지)
- '19. 7. 22.: 2차 법원 화해권고 결정(2억4,000만원 지급 취지)
- '19. 10. 11.: 판결 선고(손해배상금 139,733,100원 및 이자 지급 결정)
- '19. 10. 30.: 항소장 제출
- '19. 11. 25.: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보(원고 전오규)
- '19. 11. 26.: 강제집행정지 신청(피고 서울특별시)
- '19. 11. 28.: 강제집행정지 결정(조건부 인용: 1억4천만원 공탁)
- '19. 12. 16.: 공탁금 지급
- '19. 12. 17.: 항소이유서 제출

□ **공탁금 지급**

○ 지급일자: 2019. 12. 16.

○ 공탁금액: 금140,000,000원(금일억사천만원)

○ 지급사유

-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 선고(손해배상금 139,733,100원 및 이자 지급 결정)에 따라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법원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담보로 140백만원을 공탁할 것을 결정함('19. 11. 28.)

□ **향후계획**

- 원고가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였기에, 이에 응소하여 항소심에 우리측의 과실률에 대한 인정범위를 적극 변론하여 최소 예산만 지출될 수 있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,
-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및 현장작업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근로자의 안전사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